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 현액 : 20조 3,453억 8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 : 23조 3,293억 5천 4백만원
- 실제수납액 : 21조 9,731억 4백만원
- 불납결손액 : 4,147억 5천 3백만원
- 미 수 납 액 : 9,414억 9천 7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4.2%(전년도 93.4%)임.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20,345,383	23,329,354	21,973,104	414,753	941,497	94.2
100 일반회계	20,345,383	23,329,354	21,973,104	414,753	941,497	94.2
100 지방세수입	17,096,474	20,447,252	19,103,261	30,082	930,124	93.4
110 지방세	17,096,474	20,447,252	19,103,261	30,082	930,124	93.4
111 보통세	15,188,359	17,398,133	17,141,564	28,538	228,030	98.5
111-01 취득세	4,394,623	5,211,568	5,191,737	1,546	18,285	99.6
111-03 주민세	505,197	547,696	539,899	1,744	6,054	98.6
111-04 재산세	2,369,431	2,529,614	2,497,985	1,311	30,318	98.7
111-05 자동차세	1,101,638	1,344,198	1,275,546	1,936	66,716	94.9
111-06 레저세	132,083	135,150	135,150	0	0	100.0
111-07 담배소비세	624,383	607,910	607,910	0	0	100.0
111-08 지방소비세	1,212,695	1,399,063	1,399,063	0	0	100.0
111-09 지방소득세	4,848,309	5,622,934	5,494,275	22,002	106,658	97.7
112 목적세	1,671,518	1,793,110	1,761,370	1,544	30,196	98.2
112-01 지역자원시설세	275,965	291,993	289,134	226	2,633	99.0
112-02 지방교육세	1,395,553	1,501,117	1,472,237	1,318	27,562	98.1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미수납액	수납률 (B/A)
113 지난해도수입	236,597	1,256,009	200,327	383,785	671,898	15.9
113-01 지난해도수입	236,597	1,256,009	200,327	383,785	671,898	15.9
200 제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94.9
210 경상적 제외수입	57,101	79,756	74,859	0	4,897	93.9
211 재산임대수입	11,225	16,598	11,783	0	4,815	71.0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1,225	16,598	11,783	0	4,815	71.0
212 사용료수입	1,102	2,043	1,961	0	82	96.0
212-08 기타 사용료	1,102	2,043	1,961	0	82	96.0
213 수수료수입	700	687	687	0	0	100.0
213-01 증지수입	700	687	687	0	0	100.0
216 이자수입	44,075	60,428	60,428	0	0	1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39,267	55,562	55,562	0	0	100.0
216-06 기타이자수입	4,808	4,867	4,867	0	0	100.0
220 임시적제외수입	550,984	161,523	154,160	886	6,476	95.4
221 재산매각수입	514,961	110,818	109,978	0	840	99.2
221-03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14,961	110,818	109,978	0	840	99.2
223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106	1,386	734	0	651	53.0
223-03 변상금	962	708	417	0	291	58.8
223-04위약금	144	678	318	0	360	46.9
224 기타수입	33,861	39,942	39,790	0	152	99.6
224-02 체납처분수입	2	2	1	0	0	77.7
224-04 시·도비 반환금수입	39	23	23	0	0	100.0
224-06 그외수입	33,821	39,918	39,765	0	152	99.6
225 지난해도수입	1,056	9,377	3,658	886	4,833	39.0
225-01 지난해도 수입	1,056	9,377	3,658	886	4,833	39.0
500 보조금	1,823	1,823	1,823	0	0	100.0
510 국고보조금등	1,823	1,823	1,823	0	0	100.0
511 국고보조금등	1,823	1,823	1,823	0	0	100.0
511-01 국고보조금	1,823	1,823	1,823	0	0	100.0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39,001	2,639,001	2,639,001	0	0	100.0
710 보전수입 등	2,639,001	2,639,001	2,639,001	0	0	100.0
711 잉여금	2,431,396	2,431,396	2,431,396	0	0	100.0
711-01 순세계잉여금	2,431,396	2,431,396	2,431,396	0	0	100.0
712 전년도 이월금	207,605	207,605	207,605	0	0	100.0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207,605	207,605	207,605	0	0	10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2조 4,529억 9천 7백만원

○ 예산증감 : 8억 3천 6백만원

○ 예산현액 : 2조 4,538억 3천 3백만원

○ 지출액 : 2조 4,047억 3천 7백만원

○ 이월액 : 0원

○ 불용액 : 490억 9천 6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전년도 1.5%)가 발생

- 불용액 490억 9천 6백만원 전액 예산집행잔액임(불용액의 89.4%인 439억 1천만원이 통합인건비 불용액임).

※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통합인건비 예산 7,106억 5천 2백만원 중 지출액 6,667억 4천 1백만원, 집행잔액 439억 1천만원(불용률 6.2%)

< 2018회계연도 재무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총 예산	2,453,833	2,404,737	0	49,096	2.0
사업예산계	1,741,195	1,736,312	0	4,883	0.3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5,281	3,491	0	1,789	33.9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4,900	3,142	0	1,758	35.9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4,629	2,901	0	1,728	37.3
2017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31	201	0	29	12.7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	40	0	0	0.0
체계적인 계약제도 운영	381	349	0	31	8.3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0	20	0	0	0.9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98	84	0	14	14.4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262	245	0	17	6.5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94,973	92,507	0	2,466	2.6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94,973	92,507	0	2,466	2.6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	90,738	89,694	0	1,043	1.1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3,810	2,411	0	1,399	36.7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25	401	0	24	5.7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97	86	0	11	11.0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97	86	0	11	11.0
	계약심사 업무추진	61	52	0	9	15.0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6	34	0	2	4.3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953	1,953	0	0	0.0
	납세자 권리보호	120	120	0	0	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04	104	0	0	0.0
	마을세무사 운영	15	15	0	0	0.0
	지방세제 개선	10	10	0	0	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10	0	0	0.0
	세수증대 활동지원	1,823	1,823	0	0	0.0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1,823	1,823	0	0	0.0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1,621,544	1,621,544	0	0	0.0
	자치구교부금	1,617,500	1,617,500	0	0	0.0
	재정보전금	1,197,593	1,197,593	0	0	0.0
	시세 징수교부금	419,907	419,907	0	0	0.0
	출연(재무국 세제과)	4,044	4,044	0	0	0.0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4,044	4,044	0	0	0.0
	시세입 목표달성	9,727	9,374	0	352	3.6
	효율적인 세입관리	1,527	1,304	0	224	14.6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531	463	0	68	12.8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14	690	0	125	15.3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82	151	0	31	17.0
	세수증대 동기부여	5,758	5,727	0	31	0.5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87	187	0	0	0.2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411	411	0	0	0.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	30	0	0	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	99	0	31	23.6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5,000	5,000	0	0	0.0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관리	2,441	2,344	0	97	4.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77	1,496	0	81	5.2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45	43	0	2	4.8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19	805	0	14	1.7
조세징의 실현	7,621	7,357	0	264	3.5
강도높은 체납 시세징수지원	7,621	7,357	0	264	3.5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19	1,981	0	239	10.8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차업무지원	5,101	5,101	0	0	0.0
체납징수기법 공유 사구 합동워크숍	13	13	0	0	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88	262	0	26	9.0
일 반 예 산 계	712,638	668,425		44,213	6.2
기 본 경 비	1,986	1,684		303	15.2
인 건 비	710,652	666,741		43,910	6.2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본청 및 사업소의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라 직급보조비 편성액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 직급보조비)에서 2억 7천만원을 전용하였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세제과 세무소송팀 신설(증원)에 따라 세무부서 근무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특정업무경비) 사업에서 875천원을 변경 사용하였음.

마. 예비비 사용

- 정비구역내 사유지 매각시, 매각대금 자치구 귀속비율 적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판결(1심)에 따라 '판결금 및 이자지급' 으로 4억 8천만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으로 3억 5천 7백만원

총 2건 8억 3천 7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3천 7백만원을 지출하였음(불용률 0.0%).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2018회계연도 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시가격조사’

1개 사업에 18억 2천 3백만원

총 1개부처 1개 사업에 18억 2천 3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18억 2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0원을 불용시켰음.

3. 기금결산 : 재무국 소관 기금 없음

4. 채권현재액

부서명	채권종류	금액(백만원)	비고
계		1,523	
자산관리과	미수금	1,523	공유재산 연부매각 미수금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8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

201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519,777㎡ 9,798억 7천 7백만원

- 건물 127,165㎡ 294억 5천 4백만원

총 1조 93억 3천 1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18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개, m², 백만원)

구분	2017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 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수	면적	가격	
합계	1,777	681,868	1,045,057	58	14,210	10,623	113	49,136	46,350	1,722	646,942	1,009,331	
행정 재산	계	11	9,468	6,903	2	38	72	0	0	2	13	9,506	6,973
	공용 재산	6	600	3	1	15	62	0	0	2	7	615	63
	공공용재산	1	0	0	1	23	10	0	0	0	2	23	10
	기업용재산	0	0	0	0	0	0	0	0	0	0	0	0
	보존용재산	4	8,868	6,900	0	0	0	0	0	0	4	8,868	6,900
일반재산	1,766	672,400	1,038,154	56	14,172	10,551	113	49,136	46,348	1,709	637,436	1,002,358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18년도말 재무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2억 5천 4백만원
- 매각·폐기 등 1억 8천 9백만원
- 당해연도말 2억 4천 9백만원으로
- 총 수량 67개, 현재액은 2억 4천 9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연번	정부 물품 분류 번호	품명	단 위	정 수	내 용 연 수	구 분	2017 년도말 현재액	2018년도 물품 증감현황									2018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 매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매 각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합계				68		수량	53	3	52			55		2	35	4	41	67
						금액	184,647	6,200	248,617			254,817		6,235	170,234	13,110	189,579	249,885
1	2510 1507	스포츠 유티리 티차량	대	3	8	수량	3											3
						금액	72,348											
2	3912 1011	무정전 전원장치	대	2	10	수량			4			4			4		4	
						금액			22,624			22,624			22,624			22,624
3	4010 1701	냉방기	대		10	수량			3			3				3	3	
						금액			10,038			10,038					10,039	10,039
4	4010 1787	냉난방기	대	5	9	수량			1			1				1	1	
						금액			3,071			3,071					3,071	3,071
5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26	6	수량	19	2				2		1			1	20
						금액	23,587	1,800				1,800		1,417				1,417
6	4410 1501	복사기	대	18	6	수량	18	1	37			38		1	25		26	30
						금액	68,243	4,400	185,754			190,154		4,818	135,247		140,065	118,331
7	4410 1503	다기능 복사기	대	1	6	수량			3			3			2		2	1
						금액			18,589			18,589			3,822		3,822	14,767
8	4511 1616	비디오 프로젝터	대	7	8	수량	6		2			2			2		2	6
						금액	13,217		7,010			7,010			7,010		7,010	13,217
9	4512 1516	디지털 캠코더 또는 비디오 카메라	대	6	9	수량	7		2			2			2		2	7
						금액	7,252		1,531			1,531			1,531		1,531	7,252

II. 검토의견

1. 세입결산

< (참고)서울시 세입 결산 총괄 현황 >

□ **시세입 결산 실적 : 38조 1,121억원**(예산현액 대비 104.3%)

○ 일반회계 : **27조 948억원 징수**(예산현액 25조 4,772억원의 106.3%)

- 지방세 : 결산액 19조 1,033억원(예산 17조 965억원 대비 111.7%)

- 세외수입 : 결산액 1조 1,528억원(예산 1조 4,780억원 대비 78.0%)

- 지방교부세 등 : 결산액 6조 8,387억원(예산현액 6조 9,027억원 대비 99.1%)

▶ 지방교부세 : 예산현액 1,841억원, 결산액 1,850억원, 결산율 100.5%

▶ 국고보조금 : 예산현액 3조 6,830억원, 결산액 3조 6,120억원, 결산율 98.1%

▶ 보전수입 등 : 예산현액 3조 356억원, 결산 3조 417억원, 결산율 100.2%

○ 특별회계 : **11조 173억원 징수**(예산현액 11조 706억원의 99.5%)

- 공기업 : 예산현액 2조 307억원, 결산 2조 379억원, 결산율 100.4%

- 기타 : 예산현액 9조 399억원, 결산 8조 9,794억원, 결산율 99.3%

【시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2017년 결산(C)	전년결산 대비	
				증감액 (B-A)	비율 (B/A)		증감액 (B-C)	비율 (B/C)
합계	357,815	365,478	381,121	15,643	104.3	352,459	28,662	108.1
일반회계	252,696	254,772	270,948	16,176	106.3	247,471	23,477	109.5
시세	170,965	170,965	191,033	20,068	111.7	178,171	12,862	107.2
세외수입	14,780	14,780	11,528	-3,252	78.0	8,553	2,975	134.8
지방교부세	1,841	1,841	1,850	9	100.5	1,574	276	117.5
보조금	36,830	36,830	36,120	-710	98.1	32,225	3,895	112.1
보전수입 등	28,280	30,356	30,417	61	100.2	26,948	3,469	112.9
특별회계	105,119	110,706	110,173	-533	99.5	104,988	5,185	104.9
공기업	20,225	20,307	20,379	72	100.4	8,528	11,851	239.0
기타	84,894	90,399	89,794	-605	99.3	96,460	-6,666	93.1

가. 과다한 세수추계 오차

-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20조 3,454억원) 대비 8.0%(1조 6,277억원) 초과 수납된 21조 9,731억원임.

※ 세입 결산액 구성 : 지방세수입 19조 1,032억 6천 1백만원(87.6%), 세외수입 2,290억 1천 9백만원(1.0%), 보조금 18억 2천 3백만원(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조 6,390억 1백만원(11.3%).

- 징수결정액(23조 3,294억원) 대비 결산액(21조 9,731억원)은 94.2% 부족징수(1조 6,277억원)된 것으로 나타나 결손(4,148억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9,415억원이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은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 및 미수납액 발생은 서울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체납 세입 징수에 대한 재무국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2018회계연도 재무국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20,345,383	21,973,104	1,627,721	108.0	20,294,026	1,679,078	108.3
지방세수입	17,096,474	19,103,261	2,006,787	111.7	17,817,124	1,286,137	107.2
세 외 수 입	608,085	229,019	379,066	37.7	171,881	57,138	133.2
보 조 금	1,823	1,823	-	100.0	-	1,823	순증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639,001	2,639,001	-	100.0	2,305,021	333,980	114.5

〈2018회계연도 재무국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재무국)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19 예산액
재 무 국	20,137,778	20,345,383	23,329,354	21,973,104	414,753	941,497	94.2	18,542,356
재 무 과	2,503,231	2,710,836	2,727,754	2,727,378	3	373	99.99	144,491
자 산 관 리 과	529,374	529,374	139,293	127,809	873	10,611	91.76	603,997
계 약 심 사 과								
세 체 과	3,055	3,055	9,473	9,346	10	117	98.66	2,795
세 무 과	17,102,114	17,102,114	19,642,413	19,068,832	109,351	464,230	97.08	1,7791,068
38세금징수과	4	4	810,422	39,739	304,516	466,167	4.90	5

나. 지방세 수입 결산(19조 1,033억원)

- 지방세 시세 세입 결산액은 2018년도 예산현액(17조 965억원) 대비 119.6% 수준인 2조 447억원을 징수결정하고, 2조 68억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대비 111.7%, 징수결정액 대비 93.4%인 19조 1,033억원을 징수하였음.

※ 전년도 결산(17조 8,171억원) 대비 1조 1,286억원(7.2%) 초과 징수

- 「지방재정법¹⁾」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을 통해 세입예산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임.

< 최근3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증가율 (B/A)
2018	170,965 (전년대비 9.9%증)	170,965	191,033	20,068	11.7
2017	155,554 (전년대비 10.1%증)	155,554	178,171	22,617	14.5
2016	141,258	141,258	165,693	24,435	17.3

※ 2019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액: 17조 7,858억원('18년 대비 4.0% 증액)

1) 지방세 예산현액 대비 결산 주요 증가사유

- 재무국은 주요 지방세 초과 세입의 원인으로,
 - 취득세는 당초 예산편성 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거래 규모가 추정치 보다 적게 감소되었으며,
 - ※ 부동산 거래량 : 459,828건('17년) → 435,514건('18년)으로 △24,314건(△5.3%) 감소
 - 지방소득세는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부동산가격 상승('18년 18.8%)으로 양도 차익 증가와 법인실적이 개선되었고,
 - ※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 347만원('17년 평균) → 366만원('18년 평균)으로 5.5% 증가
 -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증가, 재산세 등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1)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 상용근로자 수 : 1,297만명('16년) → 1,334만명('17년)으로 2.9% 증가
- ※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이익 : 67.6조원('16년) → 100.6조원('17년)으로 48.9% 증가
- ※ 민간소비 : '17년 대비 5.5%, 수입 : '17년 대비 11.8% 증가

<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170,965	191,033	20,068	111.7	178,171	12,862	107.2
취 득 세	43,946	51,917	7,971	118.1	52,952	-1,035	98.0
지방소득세	48,483	54,943	6,460	113.3	46,395	8,548	118.4
지방소비세	12,127	13,991	1,864	115.4	13,054	937	107.2
재산세 등	66,409	70,182	3,773	105.7	65,770	4,412	106.7

- 그러나, 매년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은 예견되는 사항이고, 이에 따른 임금 인상, 부동산가격 상승, 민간소비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예산대비 2조 68억원(11.7%)의 지방세 초과 세입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당초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 추계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 최근3년간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증가율 (B/A)
2018	170,965 (전년대비 9.9%증)	170,965	191,033	20,068	11.7
2017	155,554 (전년대비 10.1%증)	155,554	178,171	22,617	14.5
2016	141,258	141,258	165,693	24,435	17.3

※ 2019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액: 17조 7,858억원('18년 대비 4.0% 증액)

- 예산 대비 결산액의 과도한 편차는 시급성을 요하는 시민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예산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저해하고,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위배되어 서울시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바, 재무국은 세수추계의 오류의 부정적 측면을 분명히 인식하고, 초과세입을

실적인 양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각성과 함께, 세입예산 편성 주요 지표 및 변수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등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2) 세목별 징수실적

○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 취득세는 예산편성 시점에 부동산 규제로 2017년 대비 13%~14% 거래 감소를 예상 하였으나, 실제로는 5.3%만 감소(4십 3만 6천건 거래)하여 세수가 초과 징수되었으며, 예산(4조 3,946억원) 대비 18.1%(7,971억원)를 초과한 5조 1,917억원을 징수하여, 지방세 세입 과목 중 가장 큰 예산 대비 수납 편차를 보이는바, 재무국은 취득세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위한 시급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7.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18.8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월) 등 정부규제 정책 시행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서울 전지역) 및 투기지역 지정(15개 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DTI·LTV 강화(0%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 임대주택사업자 규제, 주택담보 대출 시 신(新) DTI도입 등

< 최근3년간 취득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C=B-A	수납률 (C/A)
2018	43,946	43,946	51,917	7,971	18.1
2017	40,070	40,070	52,952	12,882	32.1
2016	33,022	33,022	48,921	15,899	48.1

< 취득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 산 액 (A)	결 산 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43,946	51,917	7,971	118.1	52,952	-1,035	98.0
부 동 산	37,481	45,395	7,914	121.1	48,335	-2,940	93.9
차 량	6,465	6,522	57	100.9	4,617	1,905	141.3

- 한편,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2017년 결산액(4조 8,335억원) 대비 2,940억원이 줄어든 4조 5,395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서울시 세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취득세(부동산)가 여느 때와 다르게 감소추세로 전환되고 있는바, 고액 부동산 신축 또는 거래 등에 대한 과세표준액 신고액에 대하여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누락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5년간 취득세 징수액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취득세	3,3112	45,276	48,921	52,952	51,917
증가율	-	36.7	8.1	8.2	△2.0

※ 거래 건당 취득세 5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 거래는 37건 4,513억원으로 전년(52건 5,557억원) 대비 15건 1,044억원 감소

- 차량 취득세의 경우 고가 수입차 및 레저용 승용차 등 차량 등록 대수 증가로 예산(6,465억원) 대비 57억원(0.9%) 초과 징수 되었고, 2017년 결산액(4,617억원) 대비 1,905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음.

※ 국산 승용차 취득은 감소(△4만 2천대) 하였으나, SUV 등 레저용 차량과 외국산 승용차는 6만 5천대 증가

< 최근3년간 취득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대)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국 산	외 산	SUV 등			
2018년(A)	3,124,651	1,585,570	372,488	700,579	120,780	337,241	7,993
2017년(B)	3,111,256	1,627,685	344,073	664,432	127,564	339,921	7,581
증 감(A-B)	13,395	-42,115	28,415	36,147	-6,784	-2,680	412

※ 자료출처 :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자동차 등록현황 보고(차종별)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오락 참여 인원 증가와 경륜 및 경정 게임 횟수 증가에 따라 예산(1,321억원) 대비 2.3%(31억원) 초과한 1,352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1,409억원) 대비 57억원(△4.0%) 감소한 규모임.

※ 경정 게임 횟수 : 2,184회('17년) → 2,292회('19년)으로 108회 증가

- 세입 초과달성의 원인을 사행성 오락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난 데에 두면서, 전년 대비 세입이 감소한 것은 논리적인 모순으로써 보다 정확한 세입 환경을 살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향적인 세수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레저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1,321	1,352	31	102.3	1,409	-57	96.0
경 마	900	903	3	100.3	955	-52	94.6
경 륜	313	340	27	108.6	343	-3	99.1
경 정	108	109	1	100.9	111	-2	98.2

-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세액이 낮은 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 예산(6,244억원) 대비 2.6%(165억원) 감소한 6,079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6,347억원) 대비 268억원(4.2%)이 감소한 규모임.

<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담 배 소 비 세	6,244	6,079	-165	97.4	6,347	-268	95.8

※ 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쉐련담배(1,007원) 보다 110원 10.3% 낮음

- 쉐련 담배 :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 쉐련형 전자담배 : 담배소비세 897원, 지방교육세 395원

- 액상형 전자담배 : 담배소비세 440원, 지방교육세 193원

※ 전자담배 판매량 : '17년 3,422만갑 → '18년 9,217만갑으로 5,795만갑(169.3%) 증가

< 담배소비세 징수액, 판매량, 증감율 현황 > (단위 : 억원, 천갑, %)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담배소비세	6,079	6,347	6,612	5,423	5,423	5,245
담배판매량	603,684	630,324	656,596	538,546	846,044	818,231
증 감 율	95.8	96.0	121.9	63.65	103.4	96.57

※ 담배판매량은 담배소비세 징수액/1,007원으로 환산하여 산출

< 담배 종류별 제세부담금 현황 > (단위 : 원, %)

구 분		궐련담배	궐련형전자담배	액상담배*(줄)
지방세	담배소비세	1,007(22.4)	897(19.9)	440(9.8)
	지방교육세	443 (9.8)	395(8.8)	193(4.3)
국 세	부가가치세	409 (9.1)	409(9.1)	409(9.1)
	개별소비세	594(13.2)	529(11.8)	259(5.8)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24 (0.5)	24(0.5)	1(0.0)
	건강진흥기금	841 (18.7)	750(16.7)	368(8.2)

- 재무국은 세입 결손(165억원)의 원인을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의 판매량 증가로 분석하고 있는바, 제원별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타당한 명분이 불분명하므로, 궐련형 전자담배 외에도 최근 출시된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제조원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근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현실화를 위한 건의 등에 면밀한 전략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상향함으로써 궐련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궐련의 89%수준으로 지방세법 개정(2017.12.28.) 된바 있음.

- 지방소비세는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민간 소비 증가* 및 수입증가*에 따라, 예산(1조 2,127억원) 대비 15.4%(1,864억원) 증가한 1조 3,991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1조 3,054억원) 대비 937억원 (7.2%) 증가하였음.

※ 지방소비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2010년 신설된 지방세로, 2013년도까지는 세율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취득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자 부가가치세의 11%를 세율로 하여 사·도에 안분하고 있는 세목으로 2020년부터는 세율이 21%로 인상될 예정임.

< 지방소비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액 (B-A)	비율 (B/A)		금액 (B-C)	비율 (B/C)
합 계	12,127	13,991	1,864	115.4	13,054	937	107.2
소비지출분(5%)	5,238	5,715	477	109.1	5,621	94	101.7
감면보전분(6%)	6,889	8,276	1,387	120.1	7,433	843	111.3

- 지방소비세는 국제인 부가가치세의 11%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별 소비지출 비율(5%) 및 취득세 감면 보전분(6%)으로 구성되어, 시도별 안분 교부로 징수 하며, 경제성장·소득 증감 등에 따른 민간 소비지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세목으로, 민간 소비 증가 및 수입증가로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이 증가하여 세입이 증가(5.4%)한 것임.

※ (소비지출분) 예산 5,238억원, 징수 5,715억원, 477억원(9.1%) 초과

▶ 전년 결산액(5,621억원) 대비 94억원(1.7%) 증가

※ (취득세보전분) 예산 6,889억원, 징수 8,276억원, 1,387억원(20.1%) 초과

▶ 전년 결산액(7,433억원) 대비 843억원(11.3%) 증가

- 한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보면, 현행 15%의 지방소비세 세율을 2020년도 추가 인상(6%, 총 21%)과 병행하여,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 보조사업(총 5.8조원 규모)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면서, 그 선결조건으로 균형 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축소(3.5조원)하고자 하고, 그 사업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늘어난 세수로 보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부담행위를 추진하고 있는바, 재정 분권 취지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 법인사업자 증가 및 상용근로자 급여 상승에 따라, 예산(5,052억원) 대비 6.9%(347억원) 증가한 5,399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4,963억원) 대비 436억원(8.8%) 증가한 것임.

< 주민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5,052	5,399	347	106.9	4,963	436	108.8
균 등 분	506	514	8	101.6	495	19	103.8
재 산 분	240	230	-10	95.8	225	5	102.2
종 업 원 분	4,306	4,655	349	108.1	4,243	412	109.7

- (균등분) 예산 506억원, 징수 514억원, 8억원(1.6%) 초과 징수
 - ▶ 전년 결산액(495억원) 대비 19억원(3.8%) 증가
- (재산분) 예산 240억원, 징수 230억원, △10억원(△4.2%) 부족 징수
 - ▶ 전년 결산액(225억원) 대비 5억원(2.2%) 증가
- (종업원분) 예산 4,306억원, 징수 4,655억원, 349억원(8.1%) 초과
 - ▶ 전년 결산액(4,243억원) 대비 412억원(9.7%) 증가

※ 주요 증가 사유 분석

- 균등분 : 세대주 1.0%↑, 개인사업자 1.3%↓, 법인사업자 8.0%↑ 증가
 - ▶ 개인세대주 : 4,221천 세대('17년) → 4,264천 세대('18년)로 43천 세대 증가
 - ▶ 개인사업자 : 456 천개('17년) → 450천개('18년)로 6천개 감소
 - ▶ 법인사업자 : 274 천개('17년) → 296천개('18년)로 22천개 증가
- 재 산 분 : 영세 자영업자 증가로 재산분 납세의무자(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대상) 감소
- 종업원분 : 근로자 급여 상승*에 따른 세입증가

*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 347만원('17년 평균) → 366만원('18년 평균)으로 5.5% 증가

○ 지방소득세는 임금 상승 등에 따른 개인 신고소득 증가에 따른 종합소득분,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분,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및 교역 증대 등 법인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소득분, 상용근로자 수 및 임금 증가에 따른 특별장수분 등 신고소득의 증가로, 예산(4조 8,483억원) 대비 13.3%(6,460억원) 증가한 5조 4,943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4조 6,395억원) 대비 8,548억원(8.4%) 증가한 규모임.

<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48,483	54,943	6,460	113.3	46,395	8,548	118.4
종합소득분	6,922	7,254	332	104.8	6,416	838	113.1
양도소득분	3,747	7,358	3,611	196.4	5,406	1,952	136.1
법인소득분	17,222	17,707	485	102.8	14,747	2,960	120.1
특별징수분	20,592	22,624	2,032	109.9	19,826	2,798	114.1

- 초과(부족)징수 사유

※ (종합소득분) 전년도 경제성장,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개인 신고소득 증가

▶ '17년 경제성장률은 3.1%, 임금상승률은 5.5% ('17년 347만원→'18년 366만원)상승

※ (양도소득분)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으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신고소득 증가

▶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률(최근3년) : '16년(8.52%), '17년(12.68%), '18년(18.77%) 상승

※ (법인소득분)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17년 세계교역 증가에 따른 반도체 등 수출 증가로 법인실적 개선 등

▶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 347만원('17년 평균) → 366만원('18년 평균)으로 5.5% 증가

※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이익 : 67.6조원('16년) → 100.6조원('17년)으로 48.9% 증가

※ (특별징수분) 상용근로자 수* 증가, 근로자 월평균 임금 상승** 등

▶ 상용근로자 수 : 1,467만명('17년) → 1,488만명('18년)으로 1.4% 증가

※ 상용근로자 평균임금 : 347만원('17년 평균) → 366만원('18년 평균)으로 5.5% 증가

-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2조 3,694억원) 대비 5.4%(1,286억원) 증가한 2조 4,980억원을 징수 하였고, 2017년 결산액(2조 2,883억원) 대비 2,097억원(9.2%) 증가하였음.

< 재산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23,694	24,980	1,286	105.4	22,883	2,097	109.2
특 별 시 분	10,767	11,697	930	108.6	10,645	1,052	109.9
도시지역분	12,927	13,283	356	102.8	12,238	1,045	108.5

< 전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

구분	주 택			건 물	토 지
	평 균	단독주택	공동주택		
2018년	8.76%	7.32%	10.19%	2.99%	6.84%

※ 추계 적용비율 : 공동주택(7.16%), 단독주택(4.85%), 건물(1.55%), 토지(4.67%)

※ 본 재산세 세입은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재원임.

<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현황_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교부액	1,165,213	1,077,375	982,902	933,536	906,538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재산세는 보유세로써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재산세 과세표준(부동산)>

구 분	재 산 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조)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109조)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 • 토 지 : 시가표준액의 70% • 건 물 : 시가표준액의 70%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공동재산세 과세대상은 항공기, 선박 및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됨(지방세기본법 제9조)

- 자동차세는 고가 수입차 및 레저형 차량 등록 증가 및 주행분 자동차세의 초과세입으로, 예산(1조 1,016억원) 대비 5.8%(1,740억원) 증가한 1조 2,756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1조 838억원) 대비 1,918억원(17.7%) 증가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 (A)	결산액 (B)	금 액 (B-A)	비 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합 계	11,016	12,756	1,740	115.8	10,838	1,918	117.7
소 유 분	5,962	5,940	-22	99.6	5,924	16	100.3
주 행 분	5,054	6,816	1,762	134.9	4,914	1,902	138.7

- 다만, 자동차세 선납(연납)액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소유분은 예산(5,962억원) 대비 2천 2백만원 부족 징수하였는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에 따른 세액 공제 감면 10%(276억원)의 규모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인바, 선납에 따른 실익과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감면률 축소 등 제도의 개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동차세 연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연납전 세액(A)	연납세액(B)	감면추계액(A-B)
합 계	2,268,803	536,400	482,755	53,645
2017	1,099,260	260,220	234,194	26,026
2018	1,169,543	276,180	248,561	27,619

※ 연(年)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 세액 공제(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 지역자원시설세는 2018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단독주택 7.32%, 공동주택 10.19%, 건물 2.99%)에 따라 예산(2,760억원) 대비 4.7%(131억원) 증가한 2,891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2,698억원) 대비 193억원(7.2%) 증가한 규모임.

<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합 계	2,760	2,891	131	104.7	2,698	193	107.2
특 정 자 원	3	4	1	133.3	4	0	100.0
특정부동산	2,757	2,887	130	104.7	2,694	193	107.2

-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 지방세에 일정률을 더하여 과세하는 부가세(附加稅)로 취득세 등 본세 증가에 따라 세입이 증가하여 예산(1조 3,956억원) 대비 5.5%(766억원) 증가한 1조 3,956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1조 4,538억원) 대비 184억원(1.3%) 증가한 것임.

< 지방교육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지방교육세	13,956	14,722	766	105.5	14,538	184	101.3

- 지난연도 시세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 경제여건 악화, 폐업 등 징수여건 악화로, 예산(2,366억원) 대비 15.3%(363억원) 부족한 2,003억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 결산액(2,094억원) 대비 91억원(4.3%) 감소한 규모임.

< 지난연도시세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예산대비		2017 결산액 (C)	전년대비	
	예산액(A)	결산액(B)	금액(B-A)	비율(B/A)		금액(B-C)	비율(B/C)
지난연도시세	2,366	2,003	-363	84.7	2,094	-91	95.7

- 재무국은 38세금징수과와 자치구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제여건 악화, 폐업 등을 사유로 징수액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지난연도 시세는 예산대비 결산률이 2017년도에도 239억원(△10.2%) 부족 징수되던데 이어 2018년도에도 363억원(△15.3%) 부족 징수되었으며, 재무국 지방세수입 중 유일하게 부족 징수(△15.3%)된 세입 과목일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실 징수액이 또한 적지 않은 규모로 줄어들고 있는 등 2년 연속 저조한 징수실적을 나타내는데, 시세 체납 징수활동이 깊은 침체기에 빠진 것으로 보여짐.

< 최근4년간 지난연도 시세 예산 대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B-A)	결산율 (B/A)
2018	2,366	2,366	2,003	-363	84.7
2017	2,333	2,333	2,094	-239	89.8
2016	2,253	2,253	2,374	121	105.4
2015	1,825	1,825	1,797	-28	98.5

※ 2018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4.86%임

- 지난연도 시세 징수실적 저조에 대하여 수년째 '경제여건 악화'라는 모호한 분석을 주장하는 것은, 징수율 저조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원인을 세세하게 분석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므로, 징수 수단별(세목별, 압류 종류별, 체납처분 방법별, 시기별 등)로 연도별 징수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징수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징수 포상금(2018년 예산액 22억원)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금액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매년 지난연도 시세 징수액의 80%를 넘게 징수하고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소송제기를 통한 징수 또는 자치구별 포상금 지급 방법에 건수를 반영하는 등 징수 노력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 지급 및 배분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3년간 지난연도 시세 징수포상금 집행 내역>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예산현액 대비		징수포상금(백만원)		
			증감액 (B-A)	수납률 (B/A)	계	시	자치구
2018	2,366	2,003	-363	-15.3	1,977	399	1,578
2017	2,333	2,094	-239	-10.2	2,058	412	1,646
2016	2,253	2,374	121	5.4	2,326	394	1,932
2015	1,825	1,797	-28	-1.5	2,480	488	1,992

○ 최근 5년간 지난연도 시세의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불법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부과취소되어야 할 고액 지난연도 시세가 현재까지 방치(128억원)되어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체납정리에 임하는 재무국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임.

※ 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서울시가 승소하였으나, 항소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69290)에서 패소(2018.8.22.)하고, 상고심(대법원 2018두57162)에서 심리불속행기각(2018.12.13.)되어 종국 패소하였음.

또한, 1심 승소하고도 종국 패소한 원인을 면밀한 분석하여, 현재 진행중인 별건의 담배소비세(258억원, 완납) 부과취소 소송에 보다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난연도 시세 중 지방소득세 미수납액(체납액) 점유율(75.4%)이 가장 높은 8,392억원에 달하고, 그 징수율은 590억원(7.0%)에 그치는 세목으로, 지방소득세 독립세화(2015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권을 갖지 못하여

체납의 원인이 되는 국세청 통보에 의한 수시부과 건은, 세입 구조상 국세의 앞선 체납처분으로 압류 등 실익있는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 압류대상 재산에 대한 납세담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 주주명부 등을 활용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간 명의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말소 사항 분석, 선순위 근저당권의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과, 사망자의 증여·상속재산 파악을 통한 승계 납세의무자 지정 등 보다 면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 면밀한 권리분석에도 불구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건에 대한 불납결손 후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2018년말 현재 9천 3백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전향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난연도 시세 세목별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합계	취득세	주민세	지 방 소득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징수결정액	13,282	922	169	8,936	1,325	115	584	484	97	650
수납액	2,094	138	61	503	728	0	154	183	36	291
결손액	2,580	207	24	1,941	91	115	55	42	11	94
미수납액	8,608	577	84	6,492	506	0	375	259	50	265
징수율	15.8	15.0	36.1	5.6	54.9	0	26.4	37.8	37.1	44.8
결손율	19.4	22.5	14.2	21.7	6.9	100	9.4	8.7	11.3	14.5
체납율	64.8	62.6	49.7	72.6	38.2	0	64.2	53.5	51.5	40.8

< 최근 5년간 재무국 소관 시세 지난연도 수입 세목별 징수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시세 소계	예산	233,297	225,248	182,489	178,481	176,213
	징수결정액	1,328,201	1,416,742	1,276,535	1,283,688	1,197,155
	수납액	209,405	237,356	179,681	177,167	187,983
	결손액	257,982	234,811	103,469	219,555	113,067
	다음연도이월액	860,814	944,575	993,385	886,966	896,105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징수율	15.8	16.8	14.1	13.8	15.7
취득세	징수결정액	92,159	105,303	95,814	111,567	118,582
	수납액	13,791	16,713	12,228	16,817	23,148
	결손액	20,688	19,411	5,720	29,146	16,182
	다음연도이월액	57,680	69,179	77,866	65,604	79,252
	징수율	15.0	15.9	12.8	15.1	19.5
주민세	징수결정액	16,916	18,188	18,324	17,653	15,126
	수납액	6,123	6,379	5,419	5,146	5,038
	결손액	2,394	3,568	3,901	2,869	1,553
	다음연도이월액	8,399	8,241	9,004	9,638	8,535
	징수율	36.2	35.1	29.6	29.2	33.3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액	893,623	939,332	859,858	858,845	800,490
	수납액	50,297	54,887	51,914	44,030	53,549
	결손액	194,052	176,423	55,280	165,604	84,423
	다음연도이월액	649,274	708,022	752,664	649,211	662,518
	징수율	5.6	5.8	6.0	5.1	6.7
자동차세	징수결정액	132,521	147,504	122,299	121,459	116,769
	수납액	72,767	79,482	49,470	49,924	52,841
	결손액	9,045	15,323	12,613	6,444	3,607
	다음연도이월액	50,709	52,699	60,216	65,091	60,321
	징수율	54.9	53.9	40.5	41.1	45.3
담배소비세	징수결정액	11,531	10,417	-	-	-
	수납액	-	-	-	-	-
	결손액	11,531	-	-	-	-
	다음연도이월액	-	10,417	-	-	-
	징수율	-	-	-	-	-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재산세 (특별시분)	징수결정액	58,425	62,082	59,277	55,208	42,263
	수납액	15,442	20,630	17,058	17,009	13,290
	결손액	5,462	5,834	7,884	4,337	1,712
	다음연도이월액	37,521	35,618	34,335	33,862	27,261
	징수율	26.4	33.2	28.8	30.8	31.4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결정액	48,374	52,603	51,966	50,870	43,047
	수납액	18,279	22,532	18,317	18,639	16,019
	결손액	4,240	4,573	7,942	3,952	1,498
	다음연도이월액	25,855	25,498	25,707	28,279	25,530
	징수율	37.8	42.8	35.2	36.6	37.2
지역자원 시설세	징수결정액	9,637	10,975	10,574	9,875	8,282
	수납액	3,609	4,214	3,158	2,805	2,403
	결손액	1,130	1,536	1,853	983	448
	다음연도이월액	4,898	5,225	5,563	6,087	5,431
	징수율	37.4	38.4	29.9	28.4	29.0
지방교육세	징수결정액	65,015	70,338	58,423	58,211	52,596
	수납액	29,097	32,519	22,117	22,797	21,695
	결손액	9,440	8,143	8,276	6,220	3,644
	다음연도이월액	26,478	29,676	28,030	29,194	27,257
	징수율	44.8	46.2	37.9	39.2	41.2

※ 폐지되거나 변경된 세목은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 기준 세목으로 작성되었음.

다. 세외수입 결산

1) 세외수입 결산 주요 증감사유

- 2018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2,413억원) 대비 실제수납액(2,290억원) 비율은 94.9%로 전년도(89.4%)보다 증가한 수준이나, 예산(6,081억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37.3%로 3,791억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되었음.

<2017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외수입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D)	수납률	
						예산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C/B)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37.7	94.9

- 세외수입 세입결산 중 예산(6,081억원) 대비 수납률은 37.7%(2,291억원)로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세외수입 예산 대비 수납률 80% 미만 과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수납률 (C/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37.7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161,523	154,160	886	6,476	28.0
재산매각수입	514,961	110,818	109,978	0	840	21.4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14,961	110,818	109,978	0	840	21.4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106	1,386	734	0	291	66.4
변상금	962	708	417	0		43.3
체납처분수입	2	2	1	0	360	50.0
시·도비 반환수입금	39	23	23	0	0	59.0

- 세외수입 징수결정액(2,413억원) 대비 실제수납액(2,290억원) 징수율은 94.9%로 전년도(89.4%)보다 증가한 수준이나, 주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세입은 ‘재산임대수입(공유재산 임대료, 71.0%)’, ‘과징금 및 과태료(변상금, 58.9% / 위약금 46.9%)’, ‘지난연도수입(지난연도수입, 39.0%)’ 등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을 80% 미만 과목>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B-C)	징수율 (B/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94.9
경상적세외수입	57,101	79,756	74,859	0	4,897	93.9
재산임대수입	11,225	16,598	11,783	0	4,815	71.0
공유재산임대료	11,225	16,598	11,783	0	4,815	71.0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161,523	154,160	886	6,476	95.4
과징금 및태료등	1,106	1,386	734		651	53.0
변상금	962	708	416		291	58.9
위약금	144	678	318		360	46.9
지난연도수입	1,056	9,377	3,658	886	4,833	39.0
지난연도수입	1,056	9,377	3,658	886	4,833	39.0

- 예산액 대비 수납규모가 과다하게 차이나는 세목의 경우는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을 크게 침해하여 재정운용상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큰 규모의 세입감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2) 과다한 세입예산 결손 발생

-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예산 5,150억원)은 예산성립 후 서울의료원 매각의 불발로 인하여, 편성한 세입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4,050억원에 달하며, 예산 대비 수납률은 21.4%(1,100억원)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징수율 (C/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37.7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161,523	154,160	886	6,476	28.0
재산매각수입	514,961	110,818	109,978	0	840	21.4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14,961	110,818	109,978	0	840	21.4
(2017회계)	511,875	51,623	49,931	0	1,691	9.8
(2016회계)	610,478	34,532	33,276	0	1,256	5.5

-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세수결손의 원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불발로 인한 것으로, 막대한 세수결손은 서울시 전체 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매년 연례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 또한, 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예산액 전액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2018년도 매각이 불발로 그쳤음에도 수납액 1,100억원이 징수되었는바, 결국 징수된 매각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공유재산의 매각은 사전 계획에 따라 편성하는 세입과목으로 누락이 없어야 할 것인바, 징수가능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재무국의 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한편, 2019회계연도에는 해당 매각부지(31,543㎡) 중 일부(7,000㎡, 22.2%)를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변경하고, 잔여부지(24,543.9㎡, 77.8%)만을 당초 매각 계획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줄어든 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조정하고자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제출한바,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에 따라 재추진하는 것은, 당해연도 내 매각이 불투명한 바, 세입예산(공유재산매각수입금)의 일부를 감액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감액 편성하여 무리한 세출예산의 편성 및 감정평가 수수료 매물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14,961	400,691	△114,270	△22.2

※ 기정예산은 최종(2016년 11월) 감정평가액: 936,292백만원의 55%

3) 예산과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 저조 분석

가) 공유재산 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 과목은 일반재산(토지·건물)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수익하는 대부자에 대한 '대부료'로, 2018년 '공유재산임대료'의 결산액은 117억 8천 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165억 9천 8백만원) 대비 71.0% 수준으로, 세입도 과소추계 및 편성했을 뿐 아니라,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71.0%)도 저조한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누락없이 세입을 편성하여 세수 결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공유재산임대료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B-C)	징수율 (B/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94.9
경상적세외수입	57,101	79,756	74,859	0	4,897	93.9
재산임대수입	11,225	16,598	11,783	0	4,815	71.0
공유재산임대료	11,225	16,598	11,783	0	4,815	71.0

나) 위약금

- 위약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조 등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후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 사업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써, '위약금'의 결산액은 3억 1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6억 7천 8백만원) 대비 46.9% 징수된 수준으로, 계약이행지체로 부과된 1건의 지연 배상금체납금으로서 일부 체납은 징수(318억원) 되어 3억 6천만원의 미수 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변상금/위약금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B-C)	징수율 (B/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94.9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161,523	154,160	886	6,476	95.4
과징금 및 과태료등	1,106	1,386	734		651	53.0
변상금	962	708	417		291	58.9
위약금	144	678	318		360	46.9

다) 변상금

- 재무국 자산관리과에서는 시유재산 점유자에 대하여 자치구에 위임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수입금 귀속 시60%,구40%)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 ‘변상금’의 세입결산액은 4억 1천 7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708백만원) 대비 58.9%로 수납률이 저조함.
- 재무국은 미수납액(291백만원) 발생의 주된 사유가 납부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자(109백만원, 강남구 개포동 수정마을 등)의 사유지 점유에 따른 체납(128백만원)과 사업자(강서구 소재 포도주류미산 유한회사)의 사업부진에 따른 체납(59백만원) 등 납부 태만을 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 2018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 중 ‘변상금’의 미수납액이 46억원을 초과하고 있는바(재무국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중 50.9% 점유),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번 높은 변상금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주문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재무국은 관계 법령²⁾에 따라 체납 발생 즉시 선제적인 압류 등을 통한 체납처분으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강도 높은 징수 방안 마련 등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2018년도 재무국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변상금)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징수결정액	수납액	(%)
지난연도수입 (세외수입)	9,377	3,658	39.0	32,563	16,148	49.6	38,7320	15,052	38.9
변상금	4,773	146	3.1	5,968	345	5.8	6,888	162	2.4

라)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 ‘지난연도수입’은 당해연도 이전에 징수결정된 수입금을 당해연도에 징수하였을 경우 「지방회계법³⁾」에 따라 발생하는 누적 개념의 세입예산 과목으로, 재무국의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의 결산액은 36억 5천 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93억 7천 7백만원) 대비 39.0%로 수납률이 저조하며, 미수납액(48억 3천 3백만원)의 주된 발생 과목은 변상금, 기타사용료, 공유 재산매각수입금(연부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변상금/위약금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B-C)	징수율 (B/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94.9
지난연도수입	1,056	9,377	3,658	886	4,833	39.0
지난연도수입	1,056	9,377	3,658	886	4,833	39.0

3)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재무국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세세목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지난연도수입 (세외수입)	9,377	3,658	39.0	32,563	16,148	49.6	38,732	15,052	38.9
공유재산 임대료	159	72	45.3	655	92	14.0	1,296	750	57.9
기타사용료	2,020	1,569	77.7	810	240	29.6	452	19	4.2
기타수수료	0	0	0.0	4	0	0.0	4	0	0.0
기타사업수입	0	0	0.0	79	53	67.1	41	16	39.0
기타이지수입	0	0	0.0	5	2	40.0	5	0	0.0
자치단체간부담금	0	0	0.0	2	2	100.0	0	0	0.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875	1,710	91.2	1,798	1,632	90.8	3,445	3,237	94.0
과징금	0	0	0.0	33	7	21.2	75	47	62.7
변상금	4,773	146	3.1	5,968	345	5.8	6,888	162	2.4
위약금	11	0	0.0	13	0	0.0	17	0	0.0
과태료	0	0	0.0	815	89	10.9	695	60	8.6
시도비반환금수입	0	0	0.0	17,990	12,610	70.1	20,175	8,602	42.6
불용품매각대	0	0	0.0	1	0	0.0	1	0	0.0
채납처분수입	24	11	45.8	24	0	0.0	24	0	0.0
그외수입	515	150	29.1	4,366	1,076	24.6	5,614	2,159	38.5

※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94억원)이 전년(326억원)에 비해 28.8% 수준으로 현저히 줄어든 이유는,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계획(세무과-18077, 2016.8.18.)호에 따라, 결산액의 연속성 및 부서별 책임감 있는 세외수입 채납관리를 목적으로, 비징수관의 지난 연도수입에 대한 결산액을 세무과에서 업무 소관부서로 이관하였기 때문임.

4) 세입예산 편성없는 고액 징수액 발생

○ 재무국 세입예산 결산 결과 예산 편성 없이 고액의 세입이 징수되어 있는바, 2017년도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에 따라 3억 3만원*의 그외수입이 수납되어 세입예산 결산 결과 예산 편성 없이 고액의 세입이 징수되었음.

* 총 300,026,050원

- 291,997,300원 : 2017회계연도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정산
- 8,028,750원 : 근저당 말소 소송비용(사건번호 2018카합100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기타수입-그외수입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 (D)	미수납액 (B-C)	수납률 (C/A)
세외수입	608,085	241,279	229,019	886	11,373	37.7
임시적세외수입	550,984	161,523	154,160	886	6,476	28.0
기타수입	33,861	39,942	39,790	0	152	99.6
그외수입	33,821	39,918	39,765	0	152	99.6

○ 한편,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의 예산편성 일반지침⁴⁾에서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의 세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세입예산 편성의 누락은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재무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재무국(38세금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관련 사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번호판 영치 업무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308-10)’를 세출예산(2019년 50억 8천 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4)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중 세입예산 요구지침

○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세입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여 누락 없이 세입예산 편성 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수입, 공금통장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라. 재무국 세입예산 종합 분석

1) 면밀한 세입예산 운용과 미수납액 대책 수립 요망

○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저조한 세목의 경우는 과세 내역별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획기적인 세입징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음.

〈예산액 대비 수납비율 과다 차이 발생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예산액	실제수납액	(%)
지방세수입	20,345,383	21,973,104	108.0	18,453,402	20,294,026	110.0	16,827,752	18,741,032	111.4
취득세	4,394,623	5,191,737	118.1	4,007,054	5,295,211	132.1	3,302,152	4,892,109	148.1
자동차세	1,101,638	1,275,546	115.8	1,054,541	1,083,784	102.8	1,039,334	1,094,143	105.3
지방소비세	1,212,695	1,399,063	115.4	1,055,931	1,305,360	123.6	950,428	1,092,322	114.9
지방소득세	4,848,309	5,494,275	113.3	4,229,767	4,639,566	109.7	4,131,153	4,189,316	101.4
기타사용료	1,102	1,961	177.9	1,057	1,809	171.2	1,049	976	93
공공요금이자수입	39,267	55,561	141.5	20,916	49,798	238.1	18,227	41,157	225.8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실제 수납액	(%)	예산액	실제 수납액	(%)	예산액	실제 수납액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14,961	109,978	21.4	511,875	49,931	9.8	610,478	33,276	5.5
변상금	962	417	43.3	1,173	241	20.6	-	-	-
위약금	144	318	221.3	0	190	-	-	-	-
채납처분수입	2	1	67.5	2	0	0	1	5	632.4
사·도비반환금수입	38	23	59.1	41	48	118.2	43	35	79.9
그외수입	33,821	39,765	117.6	33,682	36,139	107.3	43,725	54,743	125.2
세외·지ান연도수입	1,055	3,658	346.5	8,722	16,148	185.1	4,332	15,052	347.4

○ 특히,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346.5%)', '기타사용료(177.9%)', '공공예금이 자수입(141.5%)', '위약금(221.3%)', '그외수입(117.6%)', '지난연도수입(세외수입, 346.5%)과 같이 과다하게 징수되었거나, '공유재산매각수입금(21.4%)', '변상금(43.3%)' 등과 같이 과소 징수된 예산과목은 경우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크게 침해하여 재정운용상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공유재산매각수입금(△4천 50억원)'과 같은 큰 규모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집행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했었던 사항이라 하겠음.

2) 수납률 저조 세입예산에 대한 대책수립 요망

○ 한편, 대부분의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는 징수율(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16.1%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소득세(징수율 7.0%, 미수납액 7,801억원) 등은 매년 고액의 미수납액 발생 및 낮은 징수율이 발생하고 있는 등 결산일 현재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규모는 시세의 경우만 해도 1조 614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
지난연도수입	1,265,386	203,985	16.1	1,360,764	225,553	16.6	1,455,474	252,408	17.3
지난년도수입 (시세)	1,256,009	200,327	15.9	1,328,201	209,405	15.8	1,416,742	237,356	16.8
취득세	81,385	7,807	9.6	92,159	13,791	15	105,303	16,713	15.9
주민세	17,320	6,001	34.6	16,916	6,123	36.2	18,188	6,379	35.1
재산세	108,346	31,301	28.9	106,799	33,721	31.6	114,685	43,162	37.6
자동차세	122,847	67,061	54.6	132,521	72,767	54.9	147,504	79,482	53.9
담배소비세	12,848	0	0	11,531	0	0	10,417	0	0
지방소득세	839,199	59,038	7.0	893,622	50,296	5.6	939,332	54,887	5.8
지역자원시설세	8,357	2,845	34.0	9,638	3,610	37.5	10,975	4,214	38.4
지방교육세	65,707	26,274	40.0	65,015	29,097	44.8	70,338	32,519	46.2
지난년도수입 (세외수입)	9,377	3,658	39	32,563	16,148	49.6	38,732	15,052	38.9
공유재산임대료	159	72	45.3	655	92	14	1,296	750	57.9
기타사용료	2,020	1,569	77.7	810	240	29.6	452	19	4.2
공유재산매각수 입금	1,875	1,710	91.2	1,798	1,632	90.8	3,445	3,237	94
변상금	4,773	146	3.1	5,968	345	5.8	6,888	162	2.4
위약금	11	0	0	13	0	0	17	0	0
체납처분수입	24	11	45.8	24	0	0	24	0	0
그외수입	515	150	29.1	4,366	1,076	24.6	5,614	2,159	38.5

- 향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면밀한 세입 분석없이 전년에 준하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3) 지방세 시세 결손 처분 증가

- 지방세 지난연도 세입 징수결정액이 2017년도 1조 1,249억원 이후 2018년도 결산 결과 9,301억원으로 감소하였는바, 이는 2018년도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중 결손처분(4,139억원)액이 급증한데에서 기인한 것임.
- 불납결손은 면밀한 권리분석에도 불구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체납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에서 제외하고, 시효로 소멸할 때까지 지속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불납결손 처분 후 주기적인 체납자 재산조회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재산이 있음에도 시효완성 되어 소멸되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사유별					
			소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배분금액 부족	기타
2018	18,305,129	930,124	413,866	154,651	3,485	26,443	105	229,182
2017	17,158,286	1,422,119	297,247	125,379	3,454	41,699	3,114	123,600
2016	16,199,646	1,229,990	292,810	109,941	11,830	38,858	81,771	50,410
2015	15,951,977	1,302,529	136,264	62,442	1,650	27,204	9,802	35,165
2014	13,004,697	1,424,675	262,462	119,760	2,762	19,760	54,060	66,120

2. 세출결산

-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의 예산현액(2조 4,530억원) 대비 불용률은 2.0%(491억원, 전년도 1.5%)로, 전년도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전체 불용률(일반회계 2.1%)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가.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과 의회에 예산전용 미보고

- 재무국의 2018회계연도 예산의 전용은 1건에 2억 7천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내 '보수'를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고, 예산의 변경은 1건에 88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18 회계연도(일반회계) 전용사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일			
총 1건		523,326,919	270,125	270,125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101-01 보수	505,755,294	270,125		2018-11-29	505,485,169	477,302,292	28,182,877 (5.6)
	204-02 직급보조비	17,571,625		270,125		17,841,750	17,830,159	11,591 (0.1)

<2018 회계연도(일반회계) 변경사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승인일			
총 1건								
지방세심의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7,000	875		2018-11-08	56,125	56,125	-
지방세심의 위원회 운영	특정업무 경비	32,400		875		33,275	33,274	-

- 재무국은 인력운영비를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전용 사유는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라 직급보조비 편성액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내에서 목그룹을 변경하여 2억 7천만원을 전용하였음.

-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시 직원의 급여 등 지급을 위한 규모가 큰 예산(5,058억원)으로, 본 예산전용으로 2억 7천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전용하고도 집행잔액이 282억원(5.6%)이 발생한 것은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인바, 과학적인 산출기초 조사를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⁵⁾」에서는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예산 전용의 건은 지난 2019년 2월(제285회 임시회)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되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조례도 법령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느바, 조례에서 정한 의회 보고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기 위한 재무국의 성찰과 조례 준수에 대한 교육 등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사항임.

나. 10% 이상 불용(통계목별) 사업 과다

- 재무국 세출예산 결산 결과 491억원(예산현액 2조 4,530억원 대비2.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과도한 예산의 불용은 긴급을 요하는 시민 공공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여 예산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저해하는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예산 운용 행태라고 할 것인바, 실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10%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	불용	불용 률	불용사유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연금지급금	3,776	2,086	1,690	44.8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 과소 발생
	국외업무 여비	40	13	27	67.4	공무국외여행 미시행
2017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가타보상금	11	6	5	42.8	결산 감사위원 실제 근무일수 과소 발생
기본경비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1,192	950	242	20.3	편성 및 집행시 현원 차이 발생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보수	505,485	477,302	28,183	5.6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필수 지출 경비로서, 직원 호봉(일반직 등) 및 지출 연봉(임기제 등)의 평균 으로 예산을 편성함
	가타직보수	93,249	89,413	3,836	4.1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69,174	61,849	7,325	10.6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급여인상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분 등을 포함하므로 연중 직원의 임용과 퇴직으로 인한 정현원 차이와 실제 호봉 차이 등에 의해 잔액 발생
	성과상여금	24,902	20,347	4,555	18.3	2016년 성과에 대한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채비지 유상어판 및 시설관리	시설비	90,738	89,694	1,043	1.1	집단화사업관련 집행잔액 -집단화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재산교환차액 집행잔 액 발생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1,991	765	1,226	61.6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 서울의료원 매각 시기 조정 및 매각수요감소 타당성조사수수료 집행잔액 -북부지검매입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조사기관인 한국지 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미집행
	시설비	399	257	142	35.6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 구조안전성진단 결과에 따른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설치대상 축소(5개소→2개소)
	감리비	21	13	8	39.9	-낙찰 차액 발생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지출	불용	불용 률	불용사유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사무관리비	814	690	125	15.3	낙찰차액으로 인한 잔액 발생
상시세금납부 체 제 구축	공공운영비	103	72	31	30.2	-휴대폰납부 등 수수료가 없는 매체로의 시민 납부 증가로 편의점 납부 수수료 감소 -세외수입관련 안내 문자 전송 건수 소폭 감소로 휴대폰 문자수수료 감소
시세 세원발굴 지원	포상금	130	99	31	23.6	불복절차 종료 이후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징수 후 실제 지급 시까지 차이가 발생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156	88	68	43.6	지방세 수시수납S/W 사업 관련 5월 계약으로 6월부터 집행
세외수입종합징 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3	2	1	40.0	세외수입유지보수사업 2회유찰로 제안서평가회 미실시로 인한 참석수당미지급
시세입 및 체납 징수 활동 강화	기타보상금	30	1	29	96.7	신고포상금 대상자 미달
시세입 및 체납 징수 활동 강화	포상금	2,186	1,976	210	9.6	포상금 집행잔액

○ 재무국 주요 과다 불용 발생 사업은 ‘인건비’(439억원),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17억원),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14억원), ‘체비지 유상 이관 및 시설관리’(10억원) 등 4개 사업이 총 불용액 491억원의 97.8%(480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재무국은 주요 불용 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운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기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불용 10% 이상 중)

○ 기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불용률을 살펴보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공무국외여행 축소로 67.4%(27백만원)를,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잔액 발생으로 61.6%(1,226백만원)를,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탈루세원 신고포상금 대상자가 적어 96.7%(29백만원)를 불용 처리하는 등 재무국의 10% 이상 불용률 발생 사업(13개) 통계목은 19개에 이르고 있음.

- 재무국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요 발생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의 대부분은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서 다시 유사한 사유 및 규모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 없는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에 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재무국은 향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한 실소요예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감액조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과다 불용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사업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전체 직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비한 예산으로, 7,107억원의 예산현액 중 439억원(6.2%)을 불용처리 하였음.

※ 통합인건비 불용액 490억 9천 6백만원 전액 예산 집행잔액이며, 불용액의 89.4%인 439억 1천만원이 통합인건비 불용액임.

< 2018년도 인력운영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	불용	불용률
합계		710,652	710,652	43,911	6.2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보수	505,485	477,302	28,183	5.6
	기타직보수	93,249	89,413	3,836	4.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9,174	61,849	7,325	10.6
	성과상여금	24,902	20,347	4,555	18.3
	직급보조비	17,842	17,830	12	0.1

< 2016년, 2017년 인력운영비 불용 현황 >

(단위 : 천원)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2017			2016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예산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676,515	33,343	4.9	648,430	33,733	5.2
보수	472,853	7,048	1.5	455,500	6,046	1.3
기타직 보수	89,049	5,452	6.1	79,736	2,512	3.2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0,540	17,586	24.9	71,798	23,569	32.8
직급 보조비	18,091	403	2.2	17,435	405	2.3
성과 상여금	25,982	2,854	11	23,961	1,201	5

- 재무국의 ‘인력운영비’는 편성 당시의 현원과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호봉승급, 인사이동, 휴직·복직·퇴직으로 인해 연중 근무자 수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잔액(6.2%)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337억원, 2017년 333억원, 2018년 439억원등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이는 주먹구구식 인력 수급 계획과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전례답습적 예산 편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향후 인력수급 계획, 급여 체계 변경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펴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과, 인력운영 부서와 관련 예산집행부서를 일치시키는 등, 201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 예산의 이관 및 감추경 필요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마. 연금지급금 과다 불용

- ‘연금지급금’은 2016년 4억 3천 1백만원(집행률 71.9%), 2017년 5억 1천 3백만원(집행률 80.6%)이 집행되었고, 2018년에는 기타직 공무원 퇴직금 지급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일부 증액한 6억 8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최근3년간 연금지급금 당초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7.
예산액	600,000	636,000	686,000
집행액	431,931	513,093	611,303
집행률	71.9	80.6	89.1

※ '연금지급금(307-07)'은 관계 법령⁶⁾에 따라 보장된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예산과목으로 현재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 개정⁷⁾ 예정에 따라 2018년 7월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퇴직자가 예상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여 당초 예산편성액(6억 8천 6백만원)의 87.9%(6억 3백만원)가 지출된바, 3억 5천 6백만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2108.7.27.) 하였음.

○ 이후, 공무원 출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06명의 추가 퇴직 예상자가 조사('18.7)되어, 이에 대한 연금지급금 부족액 약 27억 3천 3백만원을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2018.9.14.)하였으나,

< 최근3년간 연금지급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당초예산	예비비 ('18.7)	추경편성액 ('18.9)
편성액	3,775,959	686,000	356,501	2,733,458
집행액 (집행률)	2,086,057 (55.2%)	686,000 (100%)	356,501 (100%)	1,043,556 (38.2%)
편성사유	.	최근 3년 지출액 증가 추세 등 반영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대량 퇴직(57명) 대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대량 퇴직(306명) 대비
비 고	.	.	· 지출승인일 '18.7.22 · 지출일 '18.7.27	

6)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7) 「공무원연금법」 개정·시행(2018. 9. 21.)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 지급 대상에 편입되어 기존 공무원 출신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연금 수급이 일시 정지

- ‘연금지급금’ 지급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2018.7. 3억 6천 6백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2018.9. 27억 3천 3백만원)하고도, 예산현액(37억 7,596억원) 대비 55.2%(20억 8,605억원)만을 집행하여 결국 16억 8,990만원(44.8%)을 불용처리 하였음.

< 2018년도 최종 연금지급금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통계목별	예산현액	지출	불용	불용률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연금지급금	3,776	2,086	1,690	44.8

- 이는 당초 면밀하지 못한 수요조사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또다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도 과도한 규모를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적기 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과 더불어 예비비 제도를 방만하게 운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임.
-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행위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방만한 예산집행 행태라 할 것인바, 향후 같은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재무국의 책임있는 해명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등은 ‘인건비(편성목) 중 기타직보수(통계목, 101-02)’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퇴직금(‘기타직 퇴직금’)은 목그룹을 달리하여 ‘민간이전(편성목)’ 중 ‘연금지급금(통계목, 307-07)’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인 퇴직금을, 보조금 성격이 강한 민간이전경비로 분류하는 것이 기준 인건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

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인건비로서 “인력운영비(통합편성)”로 편성하거나, 또는 굳이 경상 민간이전 경비로 보고자 할 경우 행정국의 “부조급여 지급” 사업(연금지급금(307-07))에 계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 건의 등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집행을 위한 재무국의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일반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101-01)과 기타교육직 퇴직금(101-02) 및 공무원 퇴직금(101-03)은 인력운영비(통합편성)로 편성하고 있음(2018년도 재무국 예산서 10~16p)
- ※ 2018년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에 편성하였던 것을, 인건비성 성격상 사업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 2019년 예산서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사업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7. 연금지급금 1. 101-02(기타직보수)에 계상하는 기타직 보수지급 대상자에 대한 퇴직금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급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인력운영비의 범위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

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성과상여금
	304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바.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산출기초별 전액 불용)

- 한편,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의 ‘시민참여결산 추진’, “공유 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수료’와,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은 예산편성액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산현액 전액 불용(산출기초)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산출기초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무관리비	시민참여결산 추진	17,000	0	17,000	0.0	미개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타당성조사 수수료	150,000	0	150,000	0.0	타당성 조사 비대상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200	0	1,200	0.0	유찰로 미개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회 개최 관련 위원 참석수당	1,050	0	1,050	0.0	유찰로 미개최
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제안서평가회 개최 관련 위원 참석수당	1,050	0	1,050	0.0	유찰로 미개최

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산출기초별)

- 재무국의 사업별 세출예산 산출기초별 집행 현황을 보면,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의 경우 당초 2억3천5백만을 편성하여 3억 1천 1백만원을 집행하여 7천 6백만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는 5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고 6억 1천 1백만원을 지출하여

3천 5백만원을 지출하는 등,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내역이 20건에 초과 지출액이 1억 3천 5백만원에 달하는바,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써,

- 재무국은 편성된 예산보다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당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산출기초를 마련하고, 향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태의 재발 방지에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산 산출기초 한도 초과 지출 내역 >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산출기초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초과사용)	집행률
합계			1,111,978	1,246,029	△134,925	112.1
물품구매 재무관리 및 효율화	사무관리비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2,500	3,700	△1,200	148.0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 경비	38,000	45,187	△7,187	118.9
		시금고 선정위원 위원수당	5,000	5,050	△50	101.0
	자산및물품취 득비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235,000	310,759	△75,759	132.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870	2,150	△1,280	247.1
		소규모수선비	230	268	△38	116.3
		급량비	66,240	70,080	△3,840	105.8
		계약관련 업무처리	13,554	13,709	△155	101.1
		회계관련 업무처리	25,076	26,299	△1,223	104.9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재산관리 수수료 (측량비 등)	576,000	610,652	△34,652	106.0
지방세심의위원 회 운영	사무관리비	안건인쇄 등 위원회 개최비용	9,600	11,975	△2,375	124.7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2,400	33,274	△874	102.7
마을세무사 운영	사무관리비	서울시 마을세무사 운영	1,800	2,150	△350	119.4
		리플릿 제작	6,000	6,450	△450	107.5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492	645	△153	131.1
		도서구입비	250	259	△9	103.4
		지방세 구제 및 소송수행 관련	9,990	10,904	△914	109.2

사업명	통계목	산출기초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초과사용)	집행률
		지방세정 운영 및 법령개선 업무	52,576	52,716	△140	100.3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처리	3,400	3,843	△443	113.0
고액채납시세징 수 강화	사무관리비	고지서 및 안내문 등 제작	33,000	35,959	△2,958	109.0

사. 물품 관리 철저

- 재무국의 물품정수는 68개, 2018년도말 보유량은 67개, 현재액은 2,498억 8천 5백만원으로 소관 관리 정수물품을 살펴보면,
 - ‘무정전 전원장치’의 경우 정수는 2대이나 2018년도에 4대를 관리전환 취득하여 모두 양여 처분하여 없고, ‘노트북컴퓨터’는 정수가 26대이나 20대를, ‘비디오 프로젝터’는 정수가 7대이나 6대를 보유하여 정수물품을 정량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 ‘복사기’는 정수 18대에 보유 30대로 12대를,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 카메라’는 정수 6대에 보유량은 7대로 정수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음.
- 재무국은 대부분의 정수물품 수량이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등 물품 관리가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바, 물품이 정수물품을 초과하는 경우는 방만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으며, 정수물품보다 부족하게 관리될 경우는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게 되는바, 재무국은 물품 관리의 주무 기관으로서, 상시적인 물품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한 적정물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수물품 관리·운영에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연 번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품 명	단 위	정 수	내 용 연 수	구 분	2017 연도말 현재액	2018년도 물품 증감현황								2018 년도말 보유액		
								취득					처분					
								구 매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매 각	관 리 전 환	양 여		기 타	소 계
합계				68		수량	53	3	52			55		2	35	4	41	67
						금액	184,647	6,200	248,617			254,817		6,235	170,234	13,110	189,579	249,885
1	2510 1507	스포츠 유티리 티차량	대	3	8	수량	3											3
						금액	72,348											72,348
2	3912 1011	무정전 전원장치	대	2	10	수량			4			4			4		4	
						금액			22,624			22,624			22,624		22,624	
3	4010 1701	냉방기	대		10	수량			3			3				3	3	
						금액			10,038			10,038				10,039	10,039	
4	4010 1787	냉난방기	대	5	9	수량			1			1				1	1	
						금액			3,071			3,071				3,071	3,071	
5	4321 1503	노트북 컴퓨터	대	26	6	수량	19	2				2	1				1	20
						금액	23,587	1,800				1,800	1,417				1,417	23,970
6	4410 1501	복사기	대	18	6	수량	18	1	37			38	1	25			26	30
						금액	68,243	4,400	185,754			190,154	4,818	135,247			140,065	118,331
7	4410 1503	다기능 복사기	대	1	6	수량			3			3		2			2	1
						금액			18,589			18,589		3,822			3,822	14,767
8	4511 1616	비디오 프로젝터	대	7	8	수량	6		2			2		2			2	6
						금액	13,217		7,010			7,010		7,010			7,010	13,217
9	4512 1516	디지털 캠코더 또는 비디오 카메라	대	6	9	수량	7		2			2		2			2	7
						금액	7,252		1,531			1,531		1,531			1,531	7,252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